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가합293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경희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39,141,5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4. 3.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피고는 2019. 9. 19.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역시 2020. 3. 3.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19드합5923(본소), 2020드합5165(반소)].

나. 원고와 피고가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인천 중구 C 토지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경매법원은 2021. 3. 25.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1,143,041,443원 중 3,498,100원을 당해세 채권자인 인천광역시 중구(1순위)에게, 900,401,797원을 근저당채권자인 주식회사 E(2순위)에게 각 배당하고, 잉여금 239,141,546원을 1/2지분 소유자인 피고(3순위)에게 교부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21. 3. 31.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479호로 배당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다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배당수령권의 존부라는 동일한 청구에 기초한 중복제소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보면,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고,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 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되므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배당이의의 소가 계속 중일 때 부당이득반환의 소가 별도로 제기된 경우에도 두 사건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는 만큼 배당이의의 소가 계속 중일 때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금액 이상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정당한 배당금을 넘는 부분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서울고등법원 2000. 9. 27. 선고 2000나16789 판결(확정) 참조].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결국, 피고가 정당한 배당금을 넘는 금액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배당금 수령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니, 피고는 피고가 얻은 부당이득인 배당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남기주, 판사 김성래, 판사 심용아